12~26이슈-10 1904.1.3 6:21 PM 페이지22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공사 보증 시장 참여 바람직해

- 외국환업무금융기관지위확보가관건, 3개조합공동펀드조성해봄직 -

국내 건설 경기의 악화로 건설산업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 2004년 8월 말 현재 해외건설 계약 실적은 41억달러수준으로지난해연간계약실적인 37억달러수준을이미초과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의해외수주활동은보증기관의지원을제대로 받지못해수익률제고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난관에부딪히는경우가 많다. 해외 건설공사에참가하는 대형 건설업체의경우산업은행이나수출입은행의보증을이용할수있다. 하지만해외건설공사계약에는 충분하지 않아 국책 은행의 보증을담보로다시현지금융기관혹은국제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보증을 이용하는 복보증 형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어 보증 관련금융비용이경쟁외국건설업체에비해 높다.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 회피적인 보증 운영방식으로인해국책은행의보증조차받기 어려워 공사를 수주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할때건설보증과자금융자를목적으로설립된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반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의미있는일이라할수있다.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 보증 필요성

2004년해외건설공사계약실적을공종별로구분하면, 산업설비가계약금액기준으로 7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토목과 건축 공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각각 14.2%와 4.5%에 불과하다. 이는해외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값싼노동력을 기반으로 토목이나 건축 등의 공종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물량 위주로 수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하는, 그리고고수익을얻을수있는 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있음을반영한다.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하려고 한다면, 이러한수주 패턴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중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한다.

먼저, 수주활동의중점이토목이나건축공종보다는 플랜트 부문으로 옮겨졌으나 2004년 8월말현재계약실적에서계약금액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0개사는 건설공제조합의조합원이라는사실이다. 이들대형건설업체는수출입은행이나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으나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복보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경쟁업체에비해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의 제반 보증 업무를 취급하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경쟁하게 되면 보증수수료가 낮아질가능성이 있다. 해외 건설시장에진출한대형건설업체도건설공제조합의시장진입을원하고있다. 두번째는플랜트를중심으로수주가이루어지면서 일반건설업체보다는배관이나설비등전문건설업체 혹은 용역사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있다는 점이다. 중소규모건설업체의 해외시장진출은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계약 금액 1,000만 달러 이하 공사 가전체계약건수의 71%를차지하였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건설공사관련보증서를수출입은행이나산업은행으로부터 발급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건설공제조합은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참여의필요성을이러한중소건설업체의보증수요에서찾을수있다.

해외건설 보증 시장 진입의 제도적 제한

현재건설공제조합은‘ 지급보증의보증 ’

12~26이슈-10 1904.1.3 6:21 PM 페이지23

을통해해외공사를 수주한조합원건설업체에 대하여 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해외건설공사에대한직접적인보증 지원은 아니다. 보증 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에 대하여 조합원인 해외 건설공사 참여업체가부담해야하는보증금지급채무를보증하는것이다. 지급보증의보증취급실적은 올해 2건에 보증 금액이 5,600만원으로미미한수준이다.

해외 건설공사 관련 보증 업무를 취급하는방향으로전환하는데장애가되는제도적 요인은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있는금융 기관으로분류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공제조합이보증을할수 있는대상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56조(공제조합의보증대상및내용)에명기되어있다. 이에의하면①「건산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②「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③「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⑥「문화재보호법」에의한문화재수리업등을포함한다. 따라서,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업체에대해건설공제조합은현재여건에서도「건산법」의 제약 없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외국환거래법」제8조에서규정하고있는외국환업무를취급하는 금융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외건설시장 진출 업체의 보증 지원에는 제약이있다. 외국환업무는외국환의발행또는매매, 외국과의 지급, 추심및 영수, 거주자혹은 비거주자와 외화로 표시되는예금, 금전의대차또는보증을포함한다.

「은행법」 또는「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신용 사업부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 사업 부문,「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한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의한중소기업은행등은앞에서언급한모든외국환업무를 수행할수있다.

체신관서및상기금융기관을제외한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업무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업무를취급할수있다. 이러한업무에는외화채권의매매, 외화증권의발행및매매,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파생금융거래, 거주자또는비거주자와의외화로표시되거나지급받을수있는예금, 금전의대차, 보험또는보증, 외국통화로표시된 시설대여등이포함되어있다. 재경부장관의 고시에따라이러한 업무중일부를수행할 수있는금융기관에는증권회사및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및투자자문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및 그 중앙회, 신탁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및 겸영 여신업자, 선물업자,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규정한기관등이포함된다.

이러한법적인여건을감안할때, 건설공제조합이국내건설업체가해외에서수주한 건설 공사에 대해 입찰 보증서, 계약 이행 및 선수금 환급 보증서, 하자 보수서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외국환거래법」상외국환업무를할수있는금융기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있다.

3개 공제조합이 공동 펀드 조성해봄직

여러가지현실적인여건들을감안할때, 건설공제조합이해외건설공사보증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과함께해외건설공사관련보증및금융지원에특화된펀드를조성하는것으로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한하여보증및금융을지원할수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의조합원은 일반건설업에 등록한 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로 제한되어있다는점이다.

2004년9월9일현재해외건설협회에회원사로 등록된 기업의 현황을 보면 전체 350개업체중에서건설공제조합의보증및금융지원의 대상이될수 있는일반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수는 129개 업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문건설업 분류에 속한기업이96개, 전기공사업분류에속한기업이47개, 정보통신업분류에속한기업이 13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에 속한 기업이 55개등으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기 · 정보통신 설비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해외수주 · 개발업체, 전문건설업체, 환경오염방지업체의해외건설공사와관련된보증업무를건설공제조합이취급할수있도록하는 방안은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과공동으로펀드를만드는것이라고할수있다.

3개공제조합이설립한공동펀드가실제적으로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발주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보증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통화로표시된조합채를국제금융 시장에서 발행함으로써Moody's, Standard & Poors, Fitch 등세계적인신용평가기관의평가를받는것이하나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합채의발행을 통한재원확보는조합원건설기업의출자금에 근거하는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보증 및금융지원과는달리해외공사의보증지원여부혹은보증한도의 운용을신축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보인다.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
jipins@cerik.re.kr